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2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2. 4.

제출자 : 기획예산과장



1. 제안이유

청년들의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, 청년혁신센터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교류와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활동 지원범위 확대(안 제1조)

- 청년의 창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과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

나. 청년혁신센터 정의 및 설치 범위 확대(안 제2조, 제3조)

- 청년의 창업활동뿐만 아니라 성장과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

다. 청년혁신센터 기능의 확대(안 제4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 제3조, 제24조의4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12. 17. ~ 2025. 1. 6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 (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창업활동을”을 “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청년 창업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그 활동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예비창업”을 “청년정책”으로 한다.

4.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·지원

5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
6.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,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“청년혁신센터”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설치 등) ① <u>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그 창업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설치 등) ① <u>군수는 청년 창업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그 활동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4.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4조(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·지원</u></p> <p>5. <u>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</u></p> <p>6. <u>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</u></p> <p>7. -----<u>청년정책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

7. “청년시설”이란 청년발전, 청년지원 또는 청년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시설(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24조의4(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)

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
2. 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3.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
5.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1. 사업개요

청년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과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<청년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>

- 청년활동프로그램 : 2,000,000원 x 5회 = 10,000,000원
- 센터 캐릭터 공모전 : 3,000,000원 x 1식 = 3,000,000원
- 비슬산 참꽃 문화제 홍보부스 운영 : 2,700,000원 x 1식 = 2,700,000원
- 센터 공간운영단 운영 : 19,800,000원 x 1식 = 19,800,000원

3. 관련조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, 제4조

4. 비용추계서 생략 사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

-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생략

6. 작성자 :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